

## 2007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반영된 업데이트 내용의 검토

강 원 진\*

- 
- I. 서 론
  - II. ISBP의 생성배경과 업데이트 필요성
  - III. ISBP의 업데이트 내용 검토
  - IV. 시사점 및 결론
- 

### I. 서 론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UCP 500) 제13조 서류심사의 기준에서 도입되었던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sup>1)</sup>은 그 정의나 해석기준에 대

---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국제표준은행관행이란 UCP에 반영되어 있는 규정,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 및 결정 내용에 기초하여 예견 가능한 은행업무관행을 구현하는 국제적인 표준규범이라고 할

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신용장 서류심사 상의 의문점들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UCP 500에 반영된 조항의 해석만으로는 서류심사와 관련하여 상충된 주장을 해결하고 신용장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신용장 서류심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의문점들에 대하여 각국의 은행들은 UCP 내에서 찾을 수 없을 경우 ICC 은행위원회에 질의하고 이에 따른 유권해석을 참조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그러나 이는 절차상 번잡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등 적시성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신용장의 서류심사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대하여 2000년 5월 국제상업회의소의 은행기술실무위원회(이하 “ICC 은행위원회”로 약칭함)는 ISBP 제정을 위한 특별팀을 설립하고 2년 6개월간의 작업을 통하여 2002년 10월 로마 총회에서 신용장 서류심사를 위한 ISBP가 승인되었다.<sup>2)</sup> ISBP는 UCP의 규정과 ICC 은행위원회 전문가의 의견들을 참조하여 신용장 서류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갭을 메우고 있다.

그러나 2006년 10월 ICC 은행위원회에서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인 UCP 600이 승인되고 새로 제정된 동 규칙이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ISBP도 UCP 600에 부합되게 수정 및 보완을 통하여 업데이트된 버전 제공이 필요하게 되었다.

ISBP는 국제무역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나 법률가 및 무역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용장 관행으로 이에 대한 이해 및 검토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ISBP 681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한국의 이방식·박석재 교수의 “신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에 관한 연구”(2008)<sup>4)</sup>에서 ISBP의 개정내용과 특징을 중심으로 한 개괄적인 연구가 있고, 구미의 연구로는 Byrne과 Davis의 “UCP

수 있을 것이다; ICC Document No.470/-37/4, May 27, 1991.

2)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ISBP), ICC Publication No. 645, ICC Publishing S.A., 2003. p. 8.

3) 강원진, “신용장서류심사를 위한 ICC 국제표준은행관행의 일반원칙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18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3, 144-145면.

4) 이방식·박석재, “신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 89-106면.

600하의 상업신용장의 신규칙”(2007)<sup>5)</sup>에서 UCP 600은 ISBP의 일부조항을 수용하였다는 점 및 환어음 만기일의 계산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DCInsight”에서 Erdemol은 “업데이트된 ISBP 요약”(2007)<sup>6)</sup>이라는 칼럼에서 ISBP 구성내용별로 업데이트 내용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들 연구 및 자료 등은 ISBP 681이 형성된 시기로 볼 때 얼마 되지 아니하여 대부분 개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2007년 ICC가 UCP 600에 따른 신용장 서류심사를 위한 ISBP내용 중 UCP 500 당시의 관행과 비교한 결과 수정되거나 새로 반영되어 업데이트된(updated)<sup>7)</sup>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범위는 UCP 600의 수록인 “ISBP Publication No. 681”에 반영된 185개 항목<sup>8)</sup>과 UCP 500의 수록인 “ISBP Publication No. 645”에 반영되었던 200개 항목 및 UCP 600의 조항에 반영된 내용을 비교 검토하는 데 한정한다.<sup>9)</sup> 또한 연구방법은 ISBP 항목, UCP 관련조항 및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 등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한다.

## II. ISBP의 생성배경과 업데이트 필요성

신용장의 서류심사기준이 영미의 판례법을 기초로 성립된 엄밀일치의 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과 상당일치의 원칙(doctrine of

5) James E. Byrne and Lee H. Davis, “New Rules for Commercial Letter of Credit under UCP 600”, *UCC Law Journal*, Vol. 39, Winter 2007.

6) Haluk Erdemol, “A Summary of the updated ISBP”, *DCInsight*, Vol. 13, No. 3, 2007, pp. 3-5.

7) 2007 ISBP의 변화와 관련하여 ISBP의 서문 및 DCInsight에서는 ISBP가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revision”이 아닌 “updated”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ISBP 681, Introduction; Ron Kats, “Editor’s note, ISBP 681 approved unanimously”, *DCInsight*, Vol. 13, No. 3, 2007, p. 2.

8) 본고에서 “ISBP 1, 2 ...”는 UCP 600의 조(Article)와 구별하기 위하여 “ISBP 1조, 2조...”와 같이 표현하지 아니하고 “ISBP 1항(paragraph), 2항...”이라고 표현하였다; ISBP 681, Introduction para. 2.

9) ISBP 적용과 관련된 법원 및 ICC은행위원회의 의견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례 검토는 강원진, “2002 제정 ICC 국제표준은행관행과 신용장서류심사 사례의 비교연구”, 「국제상학」, 제20권 제호, 한국국제상학회, 2005, 141-173면을 참조 바람.

substantial compliance)으로 양분되어 적용되어 오면서 이에 대한 판단기준의 상충 문제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ICC는 서류에 대한 일치성 판단 기준을 신용장거래당사자간에 은행표준관행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1993년 개정 UCP 500에서 서류심사기준을 국제표준은행관행에 의한다는 개념을 처음으로 UCP상에 반영한 바 있으나 해석상의 모호성과 불명확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02년 ICC가 200개 항에 걸친 새로운 ISBP를 제시함으로써 비로소 명실상부한 은행의 신용장서류심사기준으로 형성되게 되었다.

ISBP는 ICC의 화환신용장에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규칙인 UCP(당시 ICC Publication No. 500)의 실제적인 추록으로 UCP를 개정한 것이 아니다. 실제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심사 실무에 있어 UCP에 반영된 조항만으로는 실무상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려웠다. 이를 위하여 2000년 5월 ICC 은행위원회는 UCP 500에 준거하여 간행된 “화환신용장하에서의 서류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ISBP) 추진팀을 설립하였다.<sup>10)</sup> 화환신용장에서 서류심사를 위한 ISBP는 ICC 은행위원회의 특별팀의 작업에 의한 2년 6개월간의 산고 끝에 2002년 10월 31일 ICC 로마 총회에서 승인되고 위원회는 이를 ICC의 공식 문서로 채택하였다.<sup>11)</sup> 이 ISBP (ICC Publication No. 645)<sup>12)</sup>는 UCP 500의 보충적인 ICC 최초의 공식적인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대한 해석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sup>13)</sup> 2003년 ISBP

10) 추진팀의 공동의장(Co-Chairs)은 덴마크의 Ole Malmqvist (Danske Bank)와 미국의 Donald R. Smith (Citi Bank, N.A.) 그리고 동 위원으로는 미국의 James E. Byrne 교수 (Institute for International Banking Law and Practice) 등 10명으로 구성되었다;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ISBP)*, ICC Publication No. 645, ICC Publishing S. A., 2003. p. 4.

11) ICC 는 투표결과 찬성 57, 반대 8로 ISBP를 승인하였다; [http://www.iccwbo.org/home/news\\_archives/2002/stories/isbp.asp](http://www.iccwbo.org/home/news_archives/2002/stories/isbp.asp) ; ICC Publication No. 645.

12) 이하 ISBP 645라 한다.

13) 미국은 이미 1920년 수출상업신용장 규약(Regulations Affecting Export Commercial Credits)에서 은행표준관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고, 1995년 개정 미국 통일상법전 (Uniform Commercial Code: UCC)에서는 “신용장발행인은 금융기관의 표준관습 (standard practice of financial institute)을 준수하여야 하며 표준관습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해석에 따르는 문제로 본다”고하여 UCP의 취지를

가 간행되어 은행실무에 적용되어 오면서 신용장 사용자들에게는 필요불가결한 지침이 되어왔다.

그러나 2006년 10월 24일 및 25일 파리에서 개최된 ICC 총회에서 UCP 600이 승인되고 2007년 7월 1일부터 UCP 600이 적용됨에 따라 2003 ISBP도 새로운 UCP 600 관행에 부합되게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UCP 600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업데이트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sup>14)</sup>

첫째, UCP 변경조항은 업데이트된 ISBP 상에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UCP 600에 현재 반영되어 있는 ISBP의 세부항목은 종전 간행물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셋째, ISBP 681의 사용언어나 형식은 UCP 600의 그것과 일치되도록 변경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ICC 은행위원회의 초안그룹(drafting group)은 ISBP를 재검토하고 19개국의 코멘트된 내용을 기초로 업데이트된 ISBP를 마련하였다. 2007 ISBP는 UCP 600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UCP 600과 관련 된 관행이 서류취급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ISBP와 UCP는 독자적이 아닌 이들을 전체적으로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sup>15)</sup> 물론, 일부 국가의 법은 ISBP에 언급된 것과 다른 관행을 강요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sup>16)</sup>

2007년 4월 26일 ICC 은행위원회의는 싱가포르 회의<sup>17)</sup>에서 종전의 200개

반영하고 있다; (UCC) Article5-108(e).

14) Ron Kats, *op. cit.*, p. 2.

15) 바레인의 화환신용장 전문가인 Paul De Vos은 UCP를 규칙 및 절차로 간주하고 ISBP를 최선의 관행으로서 간주하고 있다; M. Ford, "What traders expect from the new UCP", DCINSIGHT, Vol.11, No.1, 2005. 1/3, p. 23. 반면 일부 은행들은 ISBP를 UCP의 명확화의 수단이 아닌 UCP에 반대되는 규칙으로서 오해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L.A.J. Bacon, "Some key issues in the UCP revision", DCINSIGHT, Vol.11, No.1, 2005. 1/3, p. 6; 이방식·박석재, "신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 91면에서 재인용; 한재필, "신용장거래에서의 ISBP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9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 137면.

16)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subject to UCP 600, ICC Publication No. 681, ICC Publishing S.A., 2007, Introduction.

17) ICC는 투표결과 찬성 71 반대 0 으로 2007 ISBP(Publication No. 681)을 만장일치로

항을 185개 항으로 된 “ISBP Publication No. 681”<sup>18)</sup>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이 2007 ISBP는 UCP 600이 적용되는 2007년 7월 1일부터 UCP 600의 추록으로 동시에 적용하게 되었다.

### Ⅲ. ISBP의 업데이트 내용 검토

#### 1. ISBP 구성 항목의 변화

UCP 600과 함께 적용되는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은 서문(introduction) 외에 예비적 고려사항

그러나 ISBP 681의 세부 항목은 ① 예비적 고려사항(ISBP 1~ISBP 5), ② 일반원칙(ISBP 6~ISBP 42), ③ 환어음과 만기일 계산(ISBP 43~ISBP 56), ④ 송장(ISBP 57~ISBP 67), ⑤ 적어도 두 가지 다른 운송방식을 표시하는 운송서류(ISBP 68~ISBP 90), ⑥ 선화증권(ISBP 91~ISBP 114), ⑦ 용선계약 선화증권(ISBP 115~ISBP 133), ⑧ 항공운송서류(ISBP 134~ISBP 156), ⑨ 도로/철도/내수로 운송서류(ISBP 157~ISBP 169), ⑩ 보험서류(ISBP 170~ISBP 180) 및 ⑪ 원산지증명서(ISBP 181~ISBP 185) 등 총 18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9)</sup>

이를 ISBP 645에서 구성되었던 200개 세부항목과 비교할 때 ISBP 681은 일반원칙에서 2개 항, 송장에서 3개 항, 복합운송서류에서 1개 항, 선화증권

---

승인하였다; <http://www.iccwbo.org/policy/banking/iccbcibi/index.html>

18) 이하 ISBP 681이라 한다.

19) 이하에서 ISBP 1항, 2항 등의 표기는 별도 명시가 없는 한 “2007 ISBP 681”을 기준으로 표기한다.

에서 3개 항, 용선계약선화증권에서 1개 항, 항공운송서류에서 3개 항, 보험서류에서 2개 항 총 15개 항이 삭제된 것이다. 이는 주로 UCP 600에 반영된 조항에 기초를 두어 불필요 하거나 중복되는 항목을 삭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 2. 예비적 고려사항 및 일반원칙

예비적 고려사항(Preliminary Considerations)이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은 UCP에 일부 규정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신용장의 모든 서류심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다.

ISBP의 예비적 고려사항은 신용장의 발행신청 및 발행과 관련하여 규정 (ISBP 1-5)하고 있으나 ISBP 645의 내용과 동일하다. 그러나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삭제되거나 또는 ISBP 681에 업데이트 되었다.

① ISBP 645의 16항, 즉 UCP 500 제43조 a항에서의 제시를 위한 최종 일자에 관한 규칙은 오직 한통 또는 그 이상의 원본운송서류<sup>20)</sup>를 포함하도록 요구되는 제시에만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전에 제시되어야 한다는 지침은 삭제되었다. 왜냐하면 이는 UCP 600 제14조 C항 서류심사의 기준에 “어떠한 경우에도 신용장의 유효기일보다 늦지 않아야 한다”라고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② ISBP 645의 23항, 즉 신속히(prompt), 즉시(immediately), 가능한 빨리(as soon as possible) 등의 단어 및 구절은 삭제되었다. 이는 UCP 600 제3조 해석(Interpretations)조항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③ ISBP 645의 24항, 즉 신용장에 따라 제시된 서류는 서류 상호간 모순(inconsistency)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삭제되었다. 이는 UCP 600 제14조 d항에서 “신용장 문맥을 읽을때, 서류의 데이터, 서류의 자체 및 국제표준은행관행은 서류의 데이터 또는 신용장과 동일성을 요하지 않지만 서류의 데이터, 모든 기타 규정된 서류 또는 신용장과 상충(conflict)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하여 “모순”이라는 표현은 “상충”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

---

20) UCP 500, Articles 23~29.

다.<sup>21)</sup>

④ ISBP 645의 32항, 즉 “신용장이 사본으로 서류제시를 허용하지 않는 한, 각각의 요구서류는 적어도 한통의 원본이 제시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삭제되었다. 이는 UCP 600 제17조 a항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⑤ ISBP 645의 33항 c호에 “One copy of invoice”를 요구한 경우 송장 사본 1통의 제시에 의하여 충족된다. 그러나 본 의미에서는 사본 대신에 원본 1통을 수리하는 것이 표준은행관행이라고 규정되었던 내용을 “One copy of invoice”를 요구한 경우 송장 사본 1통 또는 원본 1통의 제시에 의하여 충족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UCP 600 제17조(원본서류 및 사본) d항에 반영되어 있다.

⑥ ISBP 645의 34항, 즉 원본이 사본 대신 수리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된 지침으로 ISBP 681의 31항에서는 “신용장이 운송서류 사본을 요구하고 그 운송서류 원본에 대한 처분지시를 표시하는 경우, 운송서류 원본은 수리되지 아니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⑦ ISBP 645에서는 원본 및 사본 관련 지침으로 서류의 사본에 대한 서명 여부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다.<sup>22)</sup> 그리고 UCP 500에서도 이와 관련된 언급이 없었으나 ISBP 681에서는 원본 및 사본 관련 지침에서 “서류의 사본은 서명을 요하지 아니 한다”라는 내용을 반영하여 사본의 서명인증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있다.

이 밖에 ISBP 645에서 UCP라는 표현을 ISBP 681에서는 UCP대신 UCP 600 이라고 표현 하여<sup>23)</sup> ISBP 681이 UCP 600의 추록으로 병행 적용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 3. 환어음 및 만기일의 계산

환어음 및 만기일(draft and maturity date)에 관하여 ISBP는 환어음의 지

---

21) UCP 600 및 ISBP 681에서는 “inconsistency” 라는 용어 대신 “conflic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2) UCP 500, Article 20-c-i.

23) ISBP 681, para. 33), 70), 93) and 117).

급기일(tenor), 만기일, 배서(endorsement), 환어음의 발행, 정정 및 변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ISBP 681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 ISBP 645의 45항 d호, 즉 지급기일 중 “부터(from)” 및 “이후(after)”라는 단어가 만기일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에 있어서 UCP 500에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ISBP 645에서는 그 지침이 마련되었으나 해석상 다소 논란이 있었다.<sup>24)</sup> 이에 대하여 UCP 600 제3조(해석)에서는 선적기간 결정시 “to”, “until”, “till”, “from”, “between” 이라는 단어는 언급된 일자를 포함하고, “before” 및 “after” 라는 단어는 언급된 일자는 제외하였다. 그러나 만기일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from” 및 “after”라는 단어는 언급된 일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UCP 600 및 ISBP 681 제43항 d호에서도 종전의 조항을 정리하여 선적기간을 확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환어음 만기일을 결정하기 위한 “from”과 “after”의 해석은 UCP600에 부연하여 서류, 선적 또는 다른 행위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3월 1일 이후 또는 3월 1일부터 10일은 3월 11일이 된다. 따라서 선적시기 등 선적조건의 계산 또는 환어음 만기일 계산에 따라 이원화된 해석기준은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ISBP는 UCP 500의 규정<sup>25)</sup>이나 ICC 은행위원회의 기존의 유권해석과 상반되는 것으로 보여 왔다. 과거의 유권해석에서 “선화증권 발행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서류가 매입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신용장에서 21일의 기산에 있어서 선화증권 발행일의 포함 여부에 관한 질의<sup>26)</sup>에 대하여 UCP에는 “from”이 선적일자 이외에 달리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한 후 “from”이라는 용어는 당해일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일람후 정기출급(at XX days after sight)으로 발행된 환어음의 만기일의

24) 서정두, “ISBP(신용상 국제표준은행관습)의 주요내용과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2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3, 336면.

25) 선적에 관련한 신용장상의 일자 또는 기간에 적용되는 “to”, “until”, “till”, “from”이라는 용어 및 이와 유사한 의미의 용어는 당해 일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된다; UCP 500, Article 47-a.

26) ICC Banking Commission Pub. No. 632, R.294.

계산을 위한 기산일로는 서류가 일치하거나 또는 서류가 불일치하더라도 지급은행(drawee bank)이 서류를 거절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지급은행의 서류수령일이 되며,<sup>27)</sup> 서류가 불일치하여 지급은행이 서류의 거절통지를 하였다가 추후에 승인한 경우에는 환어음의 인수일이 된다.<sup>28)</sup>

만기일의 계산과 관련된 사례<sup>29)</sup>에서 2월 1일에 발행은행이 만기일이 '30 days after sight'인 기한부 환어음과 서류를 접수하였고, 2월 2일 서류를 심사하여 하자를 발견하고 지급거절을 통지하였다. 이후에 발행의뢰인이 하자를 승인하여 2월 14일 발행은행이 환어음을 인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서류접수일, 서류심사일 또는 서류수령일 중에서 어느 일자를 환어음의 만기일 산정을 위한 기산일로 하여야 하는가를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ICC 은행위원회는 서류에 하자가 있어 발행은행이 지급거절을 통지한 경우 발행은행은 환어음을 인수할 의무가 없으며, 환어음 및 서류는 수익자의 처분에 있으므로 'xx days after sight'라는 조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자서류에 대하여 발행의뢰인이 하자를 승인하고 발행은행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발행은행의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승인의 시점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② ISBP 645의 48항 b호, 즉 불일치 서류에 대한 지급은행의 추인과 관련된 내용에서 “환어음의 인수일은 서류의 승인일 까지”를 ISBP 681의 45항 b호에서는 “환어음의 인수일은 발행은행이 발행의뢰인의 권리포기(waiver)를 승인하는 일자까지”로 변경하였다.

③ ISBP 645의 56항의 발행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한 환어음을 요구 하는 것으로 발행되어서는 아니 되며 신용장이 이와 같은 환어음을 요구한 경우, 은행은 추가적인 서류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지침에 대하여 ISBP 681의 54항에서는 “신용장은 요구서류 중의 하나로 발행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된 환어음을 요구하는 것으로 발행될 수 있으나, 발행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된 환어음에 의하여 사용가능하도록 발행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27) ISBP 645, para. 48-a.

28) ISBP 645, para. 45-b. 하자서류를 추후에 승인하는 경우에도 환어음의 만기일은 인수일이 아닌 서류의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아시아의 국내위원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반영되지는 못하였다; ICC, *ICC DCinsight*, Vol. 9 No. 2, 2003. 4-6, p. 11.

29) ICC Document 470/TA.448, April 6, 2000.

하여 신용장의 사용가능성, 즉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 중 어느 하나로 발행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된 환어음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UCP 500<sup>30)</sup>과 달리 UCP 600 및 ISBP 681에서는 이와 같은 환어음에 대하여 추가적인 서류로 간주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 4. 송장

송장(invoice)에 관하여 ISBP는 송장의 정의, 명칭 및 주소, 물품명세 및 송장에 관련된 다른 일반적인 사항들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송장과 관련하여 ISBP 681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 송장의 명칭 및 주소와 관련하여 ISBP 645의 60항 수익자에 의하여 발행된 송장 및 61항 발행의뢰인 앞으로 작성된 송장에 대한 지침은 삭제되었다. 왜냐하면 UCP 600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에서 “수익자 및 발행의뢰인의 주소가 모든 명기된 서류상에 보이는 경우 이들 주소는 신용장 또는 명기된 모든 기타 서류에 명시된 것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신용장에 언급된 각각의 주소와 동일한 국가 내에 있어야 한다. 수익자 및 발행의뢰인의 주소의 일부로서 명기된 연락처명세(모사전송, 전화, 전자우편 등)는 무시된다”<sup>31)</sup> 라는 규정과 제18조에 규정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요건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ICC 은행위원회는 상업송장에서 수익자의 주소에서 우편지역번호를 “2056” 대신에 “0256”으로 표기한 경우 오자로 인한 위험이 없고 명백한 타자의 오류임으로 불일치로 취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sup>32)</sup> 송장의 주소에 포함된 텔렉스나 팩스 번호 등의 세부사항까지 신용장과 일치할 필요는 없으나 국가명이 다르게 표기될 정도로 신용장과 차이가 있는 주소의 표기는 불일치로 간주 된다<sup>33)</sup>고 하고 있다.

30) UCP 500, Article 9-a-iv.

31) 그러나 발행의뢰인의 주소 및 연락처 명세가 UCP 600 제19~제25조에 따라 운송서류상의 수화인 또는 착화통자처 명세의 일부인 경우에는 신용장에 명시된 것과 같아야 한다, UCP 600, Article 14-j.

32) ICC Banking Commission Publication. No. 632, R.209.

② ISBP 645의 62항 및 63항에서 송장의 물품명세(description of the goods in the invoice)라는 표현은 ISBP 681에서는 송장의 물품, 서비스 또는 이행의 명세(description of the goods, services or performance in the invoice)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sup>34)</sup>

이는 UCP 600 에서는 상업송장상의 물품, 서비스 또는 이행의 명세는 신용장에 보이는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sup>35)</sup> 라는 규정과 병행되는 지침이다.

③ ISBP 645의 71항에서 “요구된 원본과 사본의 숫자는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라는 지침을 삭제하였다. 왜냐하면 UCP 600 제17조 원본서류 및 사본에 관한 규정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 5. 운송서류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에 관하여 ISBP는 적어도 두 가지 다른 운송방식을 표시하는 운송서류(복합운송서류), 선화증권, 용선계약 선화증권 그리고 항공운송서류 및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ISBP 681에서는 UCP 600의 운송서류 관련 규정(제19조-25조)에서 제19조 적어도 두 가지 다른 운송방식을 표시하는 운송서류부터 규정하고 있는 순서에 부합되게 ISBP의 운송서류에 대한 지침, 즉 복합운송서류부터 제시하고 있다.

### 1) 적어도 두가지 다른 운송방식을 표시하는 운송서류

복합운송서류에 관하여 ISBP는 UCP 600 제19조의 적용, 원본, 서명, 본선 적재부기, 수탁지 발송지, 환적 및 분할선적, 무사고 복합운송서류, 물품명세, 정정 및 변경, 운임 및 추가비용, 하나 이상의 복합운송서류에 의하여 커버된 물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복합운송서류와 관련하여 ISBP 681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

33) ICC Banking Commission Publication. No. 632, R.223.

34) ISBP 681, para. 58) and 59).

35) UCP 600. Article 18-c.

같다.

① ISBP 645의 123항, 즉 복합운송서류의 서명과 관련하여 서명자 중에 운송인외에 복합운송인(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MTO)을 포함시켰으나 ISBP 681의 71항에서 복합운송인(MTO)은 삭제시켰다. 그 이유는 UCP 500의 복합운송서류의 서명자로 반영되었던<sup>36)</sup> 운송인(대리인 포함), 복합운송인(대리인 포함), 선장(대리인 포함)을 UCP 600<sup>37)</sup>에서는 운송인(대리인 포함) 속에 복합운송인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삭제된 것을 ISBP에서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ISBP 645의 131항, 즉 환적의 정의 및 환적 운송서류 수리에 관한 지침에 대하여 이는 UCP 600의 제19조 c항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ISBP 681에서는 환적의 정의에 한하여 간결하게 정의하고 있다. 복합운송에서 환적이란 신용장에 명시된 수탁지, 발송지 또는 선적지로부터 최종목적지까지의 운송 중 하나의 운송수단(means of conveyance)으로부터 다른 운송수단으로의 물품의 양화(unloading) 및 재적재(reloading)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sup>38)</sup>

③ ISBP 645의 135항, 즉 무사고 본선적재 복합운송서류(clean on board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를 요구하더라도 “무사고”라는 단어는 복합운송서류상에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지침을 삭제하였다.<sup>39)</sup> 이에 대하여 UCP 600 무사고 운송서류(clean transport document) 규정을 두어 신용장이 운송서류가 “무사고 본선선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하는 경우일지라도 “무사고”라는 단어는 운송서류상에 나타낼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sup>40)</sup>

④ ISBP 645의 142항, 즉 운임에 대한 추가 비용과 관련하여 ISBP 681의 89항에서는 물품의 양화에 있어서의 지연 또는 물품이 양화된 이후 지연의 결과로서, “컨테이너의 지연반환을 커버하는 비용”에 대한 예를 추가하고

36) UCP 500, Article 26-a-i.

37) UCP 600, Article 19-a-i.

38) ISBP 681, para. 79).

39) 이와 같은 취지는 ISBP 645의 해상선화증권(ISBP 645, Para.91), 용선계약 선화증권(ISBP 645, Para. 112) 및 항공운송서류(ISBP 645, Para. 162)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40) UCP 600, Article 27; 이와 같은 취지는 선화증권(ISBP 681, Para.107), 용선계약 선화증권(ISBP 681, Para. 127) 및 항공운송서류(ISBP 681, Para. 149)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있다.

## 2) 선화증권

항구간 선적, 해상 또는 해양을 커버하는 선화증권에 관하여 ISBP 681은 UCP 600 제20조의 적용, 원본, 선화증권의 서명, 본선선적부기, 적재항 및 양륙항, 환적 및 분할선적, 무사고 선화증권, 물품명세, 정정 및 변경, 운임 및 추가비용 그리고 하나 이상의 선화증권에 의하여 커버된 물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선화증권(bill of lading)과 관련하여 ISBP 681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 ISBP 645의 73항, 즉 신용장이 “항구간 선적을 커버하는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 covering a port-to-port shipment)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및 ISBP 645의 74항, 즉 신용장이 해상 또는 해양운송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를 ISBP 681의 91항에서는 “해상선적만을 커버하는 선화증권”(bill of lading covering sea shipment only)제시를 요구한 경우 UCP 600 제20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고 이에 따르기 위하여 선화증권이 항구간 선적을 커버하는 것을 나타내야 하지만 해상, 해양 또는 항구간 또는 유사한 서류라는 용어의 사용을 요하지 아니 한다<sup>41)</sup>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UCP 500 제23조 해상/해양선화증권 관련 규정에서 선화증권이 적재항과 다른 수령지 또는 수탁지(place of receipt or taking in charge)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sup>42)</sup> 및 적재항과 다른 수탁지 및/또는 양륙항과 다른 최종목적지를 표시한 것도 수리 된다<sup>43)</sup>는 규정이 복합운송관련 조항과 상충될 수 있어 UCP 600에서는 이와 같은 문언을 삭제하고 선화증권이 “신용장에 명시된 적재항으로부터 양륙항까지의 선적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명확성을 기하고 있다. 따라서 운송서류상에 내륙지역의 물품수탁 장소 등을 명시하도록 요구된 경우에는 선화증권 대신 복합운송서류(Multimodal Transport Document)를 요구하여야 한다.<sup>44)</sup>

---

41) ISBP 681, para. 92).

42) UCP 500, Article 23-ii.

43) UCP 500, Article 23-iii-a.

선적항과 관련된 사례<sup>45)</sup>로 환적이 허용되는 신용장에서 선적항을 방콕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선화증권에는 선적항이 싱가포르 기재되고 하단에 특별조항으로 수탁지는 방콕이고 선적항은 싱가포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은행위원회는 선화증권의 특별조항에 의거하여 선적항은 방콕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용장 조건과 일치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신용장에서 선적항을 방콕으로 명시하였으나 제시된 선화증권은 선적항을 싱가포르 표기하였고 방콕은 선적항이 아닌 물품의 수탁지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하자이나 신용장에서 환적이 허용되어 있고 선화증권의 특별조항에서 별도의 선박에 의하여 방콕에서 선적되어 있음을 표기하고 있으므로, 본 건의 선화증권은 방콕에서 선적하여 싱가포르에서 환적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용장 조건과 일치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양륙항과 관련된 사례<sup>46)</sup>로 환적이 허용되는 신용장에서 양륙항을 A항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선화증권에는 B항이 양륙항으로, A항은 도착지라고 표기되어 있었으며, 기타 표기란에 양륙항이 A항이며 B항에서 환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은행위원회는 신용장에는 양륙항을 A항으로 표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양륙항란에는 B항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A항이 양륙항이라는 표기는 기타 표기란에 되어 있으므로 하자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sup>47)</sup>

② ISBP 645의 82항, 즉 컨테이너야적장(Container Yard: CY) 또는 컨테이너물품조작장(Container Freight Station: CFS)이 수령지로 기재되고 그 장소가 기재된 적재항과 동일한 경우 이러한 장소들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본선선적” 부기에는 적재항의 명세와 선박의 명칭은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은 삭제되었다. 왜냐하면 UCP 600 제19조<sup>48)</sup>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③ 비록 환적(transshipment)<sup>49)</sup>이 금지된다 하더라도, UCP 500 제23조 d

44) Haluk Erdemol., “A Summary of the updated ISBP”, *DCInsight*, Vol. 13, No. 3, 2007, p. 4.

45) ICC Document 470/TA.335, July 28, 1999.

46) ISBP 83.

47) ICC Document 470/TA.508, November 13, 2001.

48) UCP 600, Article 19-a-ii; UCP 600, Article 20-a-ii.

49) 환적이란 신용장상의 적재항으로부터 양륙항까지의 해상운송 중에 한 선박에서 다

항50)은 특정한 상황 하에서의 환적을 허용하고 있지만,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고 UCP 500 제23조를 배제하는 경우, 문면상 환적이 되거나 될 수 있을 기재한 선화증권은 불일치한 것으로 간주 된다<sup>51)</sup>는 규정은 UCP 600의 제20조<sup>52)</sup>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ISBP 681에서는 삭제되었다.

### 3) 용선계약 선화증권

용선계약 선화증권(charter party bill of lading)에 관하여 ISBP 681은 UCP 600 제22조의 적용, 원본, 선화증권의 서명, 본선선적부기, 적재항 및 양륙항, 환적 및 분할선적, 무사고 선화증권, 물품명세, 정정 및 변경, 운임 및 추가비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용선계약 선화증권과 관련하여 ISBP 681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 ISBP 645의 100항, 즉 UCP 500 제25조의 적용에서 신용장이 “항구간 선적을 커버하는 용선계약 선화증권”(charter party bill of lading covering a port-to-port shipment)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를 ISBP 681의 115항에서는 “항구간 선적을 커버하는”이라는 문언을 삭제하고 “신용장이 용선계약 선화증권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UCP 600 제22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여 UCP 600 제20조의 적용과 관련된 선화증권제시와 중복되는 혼란방지 및 용선계약 선화증권의 적용 관행을 분명히 하고 있다.<sup>53)</sup>

② 용선계약 선화증권의 서명과 관련하여 ISBP 645의 103항에서는 선장(함장) 또는 선주가 서명 및 확인되도록 하였으나, ISBP 681의 118항에서는 UCP 600에 반영된 바와 같이<sup>54)</sup> 선장(함장), 용선자 또는 선주가 용선계약

---

른 선박으로의 물품의 양륙 및 재 선적을 말한다. 이러한 두 항구간에서 발생되지 않는 경우, 양륙과 재선적은 환적으로 간주되지 아니 한다; ISBP 681, Para. 104).

50) 신용장이 비록 환적을 금지한 경우에도 은행은 다음과 같은 선화증권을 수리한다.  
i. 전 해양운송은 단일 및 동일한 선화증권에 의하여 커버되어야 하며, 관련 물품이 컨테이너, 트레일러 및/또는 래쉬선에 선적되고, 그것이 선화증권으로 입증되어 있는 한 환적 될 것이라고 명시한 것. 다만 전해양운송은 단일 및 동일한 선화증권에 의하여 커버되는 경우, 및/또는 ii. 운송인이 환적 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표기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51) ISBP 681, para. 88).

52) UCP 600, Article 20-b~d.

53) ISBP 681, para. 91) and 92).

54) UCP 600, Article 22-a-i.

선화증권에 서명 및 확인 되도록 하여 용선자(charterer)를 추가하고 있다.<sup>55)</sup>

③ 용선계약 선화증권 상의 정정 및 변경과 관련하여 ISBP 645의 115항에 서는 선주, 선장(함장)에 의하여 확인되도록 하였으나, ISBP 681의 129항에 서는 선주, 용선자 또는 선장(함장)에 의하여 확인 되도록 하여 용선자(charterer)를 추가하고 있다.<sup>56)</sup>

#### 4) 항공운송서류

항공운송서류(air transport document)에 관하여 ISBP 681은 UCP 600 제 23조의 적용, 원본, 서명, 선적일, 발송일, 출발공항 및 목적공항, 환적 및 분할선적, 무사고 항공운송서류, 물품명세, 정정 및 변경, 운임 및 추가비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공운송서류와 관련하여 ISBP 681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 ISBP 645의 150항에서 신용장이 항공운송서류에 실제의 발송일이 나타나도록 지시한 경우, 발송일은 선적일로 간주되며, “운송인전용(For Carrier Use Only)”이라는 표제의 란에 포함된 정보는 실제의 발송일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 한다는 내용과 동 151항에서 신용장에서 실제의 발송일이 서류상에 나타나도록 요구하지 않은 경우, “운송인 전용” 또는 유사한 표현이 표시된 란에 운항일 또는 운항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항공운송서류의 발행일은 발송일로 간주된다는 내용을 ISBP 681에서는 UCP 600 제23조의 규정<sup>57)</sup>에 반영된 내용을 고려하여 삭제하였다.

② ISBP 681의 140항에서는 위의 2개의 항을 통합하여 “항공운송서류의 발행일은 선적일로 간주된다. 서류가 실제의 운항일에 대한 별도의 부기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경우 선적일로 간주된다. 운항번호 및 운항일과 관

55) 대리인이 용선계약 선화증권에 서명하는 경우에도 선장(함장), 용선자 또는 선주의 명칭을 기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ISBP 681, para. 118-b).

56) 이들의 대리인에 의하여 정정 및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ISBP 681, para. 129).

57) UCP 600, Article 23-iii; “.....발행일을 표시하고 있는 것. 이 일자는 항공운송서류가 실제 선적일에 관한 특정표기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표기에 명시된 일자는 선적일로 본다. 운항번호와 일자와 관련하여 항공운송서류상에 보이는 모든 기타 정보는 선적일을 결정하는데 고려되지 아니 한다”와 같이 항공운송서류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련하여 항공운송서류 상에 나타나는 그 외의 정보는 선적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되지 아니 한다”라고 재정비하였다.

③ ISBP 645의 157항, 즉 비록 환적이 금지된다 하더라도 전체의 운송이 하나의 동일한 항공운송서류에 의하여 커버되는 한 환적을 허용한다는 내용은 삭제되었다. 왜냐하면 UCP 600<sup>58)</sup>에 이 내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 5)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road, rail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documents)에 관하여 ISBP 681은 UCP 600 제24조의 적용, 원본, 및 부분, 서명, 지시인 및 착화통지처, 분할선적, 물품명세, 정정 및 변경, 운임 및 추가비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와 관련하여 ISBP 681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 ISBP 645의 178항, 즉 “운송서류의 물품명세는 신용장에 기재된 것과 모순되지 아니하는 일반용어로 기재될 수 있다”를 ISBP 681의 165항에서도 UCP 600과 ISBP 681의 여타 항의 내용과 같이 “모순”이라는 용어가 “상충”(conflict)으로 대체되었다.

## 6. 보험서류

보험서류(insurance documents)에 관하여 ISBP는 UCP 600 제28조의 적용, 보험서류의 발행인, 담보 위험, 일자, 통화 및 금액, 피보험자 및 배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보험서류와 관련하여 ISBP 681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 ISBP 645의 보험서류(insurance documents)라는 항목의 제목을 ISBP 681에서는 보험서류 및 담보범위(insurance document and coverage)라는 제목으로 바꾸었다. 이는 UCP 600 제28조의 제목과 일치된다.

---

58) UCP 600, Article 23-c-i.

② ISBP 645의 제183항, 즉 “신용장이 보험서류의 제시를 요구한 경우”를 ISBP 681의 UCP 600 제28조 적용은 “신용장이 포괄예정보험에 의한 보험증권, 보험증명서 또는 통지서와 같은 보험서류를 요구한 경우”라고 하여 보험서류의 종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③ ISBP 645의 제184항, 즉 보험서류의 발행인은 “보험회사, 보험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ISBP 681에서는 여기에다 대리업자(proxyes)를 추가하였다.<sup>59)</sup> 이는 UCP 600의 규정<sup>60)</sup>과도 일치된다. ICC 은행위원회<sup>61)</sup>에서도 서명이 “proxies”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명시된 보험서류는 수리된다고 하였다.

④ ISBP 645의 제188항, 즉 “보험서류는 위험이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선적지, 발송지 또는 수탁지와 양화지 또는 최종목적지 간을 담보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라는 담보구간 및 제189항 “담보가 늦어도 신용장에 명시된 장소에서 물품의 본선선적일 또는 발송일 또는 수탁일로부터 유효하다는 것이 보험서류로부터 나타나지 않는 한, 보험서류는 신용장에 명시된 장소에서 물품의 본선선적일 또는 발송일 또는 수탁일보다 늦은 발행일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라는 담보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된 내용은 ISBP 681에서 각각 삭제되었다. 이는 UCP 600에서<sup>62)</sup>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⑤ ISBP 645의 제191항 중에서 “신용장이 최소담보비율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최소담보비율금액은 CIF 가액의 110%, 또는 CIP 가액의 110%이어야 한다. “110%에 대한 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요구사항은 요구된 보험담보의 최저금액으로 간주 된다”라는 내용은 ISBP 681에서는 삭제되었다. 이는 UCP 600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sup>63)</sup>

보험부보비율에 관한 사례<sup>64)</sup>에서 ICC 은행위원회는 신용장에서 부보비율이나 부보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UCP 제34조에 의하여 보험서류의 부보금액은 CIF 또는 CIP 가격의 110% 이상의 금액으로만 발행된다면 수리가

59) ISBP 681, para. 171).

60) UCP 600, Article 28-a.

61) ICC Banking Commission, Unpublished Opinions 1995-2004, ICC Publication No. 660, 2005, R.580.

62) UCP 600, Article 28-e and Article 28-f-iii.

63) UCP 600, Article 28-f-ii.

64) ICC Document 470/TA.499, April 2, 2001.

능하고 부보금액의 상한선은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 7.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에 관하여 ISBP는 기본요건, 원산지증명서의 발행인, 원산지증명서의 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하여 ISBP 681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 ISBP의 제198항 “원산지증명서의 물품명세는 신용장에 표시된 것과 모순되지 아니하는 일반용어로 ....” 및 제199항 “수화인 정보는, 운송서류의 수화인 정보와 모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표현 중 “모순(inconsistent)”을 ISBP 681에서 “상충(conflict)”으로 대체한 것<sup>65)</sup>을 제외하면 업데이트된 내용이 없다.

## IV. 시사점 및 결론

ICC 은행위원회는 2007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UCP 600이 적용됨과 동시에 ISBP도 이와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된 ISBP 681을 마련하였다. 업데이트된 ISBP 681은 서문 외에 예비적 고려사항, 일반원칙, 환어음, 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및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하여 세부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frame)는 ISBP 645와 동일하다.

이에 따라 UCP 600에 반영되어 있는 종전의 ISBP 645의 200개 항(paragraph)은 업데이트된 ISBP 681에서는 삭제되어 185개 항으로 제시되었다. ISBP 645의 세부 항에 대한 축소는 UCP 600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거나 사용 용어나 형식을 UCP 600의 그것과 일치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업데이트된 내용 중 모순(inconsistency)이라는 단어를 모두 상충(conflict)

---

65) ISBP 681, para. 183) and para. 184).

이라는 단어로 바꾼 것은 신용장과 서류사이에 대조 또는 비교되는 개념을 고려한 기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환어음의 만기일에 사용되는 “from”이라는 용어의 해석 기준은 UCP 500의 규정<sup>66)</sup>과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sup>67)</sup>과 상치되었던 것을 UCP 600과 ISBP 681에서는 선적기간 결정의 경우 당해일자를 포함하고, 환어음 만기일 기산의 경우 당해일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원화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적용범위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다. 선적기일이나 만기일의 계산이 아닌 기타의 것에 “from”이나 “after”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 UCP는 아무런 지침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sup>68)</sup> 따라서 신용장 조건에 선적기일 및 환어음 만기일이 아닌 “xxx의 발행일로 부터(from the date of issuance of xxx)” 등과 같은 조건이 포함될 경우 “from”에 대한 해석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고 볼 수 있다.

송장의 물품명세(description of the goods)라는 표현을 ISBP 681에서는 UCP 600과 같이 송장의 물품, 서비스 또는 이행의 명세(description of the goods, services or performance)로 표현하여 물품매매만이 아닌 서비스매매에도 신용장이 사용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송장에 기재되는 명세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SBP 681에서는 UCP 600의 운송서류 관련 규정(제19조-25조) 순서에 부합되게 적어도 두 가지 다른 운송방식을 표시하는 운송서류인 복합운송서류, 해상선화증권, 용선계약선화증권, 항공운송서류 순으로 일치시키고 있다.

ISBP에 반영된 내용은 UCP 600과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opinions) 및 결정(decisions) 내용과 일치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sup>69)</sup> ISBP는 강행규

66) UCP 500, Article 47-a.

67) 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 Publication. No. 632, 2003, R.294; ICC 은행위원회의 유권해석에서 UCP에는 “from”이 선적일자 이외에 달리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한 후 “from”이라는 용어는 당해일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하여 이 용어와 관련된 해석상의 혼란이 있었다.

68) James E. Byrne and Lee H. Davis, “New Rules for Commercial Letter of Credit under UCP 600”, *UCC Law Journal*, Vol. 39, Winter 2007, III-4-a..

69)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ISBP), ICC Publication No. 645, ICC Publishing S.A., 2003. p. 8; 강원진, “2002 제정 ICC 국제표준은행관행과 신용장서류심사 사례의 비교 연구”, 「국제상학」, 제20권 제호, 한국국제상학회, 2005, 169면.

칙이 아니고 실제로 UCP 600을 대체하지는 않으나 주석(explanatory notes) 형식의 추록(supplement)<sup>70)</sup>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용장은 ISBP를 전제로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UCP 600의 해석기준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UCP 600에 준거한 신용장거래는 UCP 600을 근간으로 하여 보다 보충적이고 실제적인 업무관행은 ISBP 681과 병행 검토함으로써 제시서류에 대한 신용장 서류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70) Roberto bergami,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Panacea or Confusion?", *Vindobona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 Arbitration*, Vol. 8, p. 280.

## 참 고 문 헌

- 강원진, “2002 제정 ICC 국제표준은행관행과 신용장서류심사 사례의 비교연구”, 『국제상학』, 제20권 제호, 한국국제상학회, 2005.
- \_\_\_\_\_, “신용장서류심사를 위한 ICC 국제표준은행관행의 일반원칙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18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3.
- 서정두, “ISBP(신용상 국제표준은행관습)의 주요내용과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2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3.
- 이방식·박석재, “신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
- 한재필, “신용장거래에서의 ISBP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9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

### (구미문헌)

- Bergami Roberto,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Panacea or Confusion?", *Vindobona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Arbitration*, Vol. 8, 2004.
- Byrne James E. and Davis Lee H., "New Rules for Commercial Letter of Credit under UCP 600", *UCC Law Journal*, Vol. 39, Winter 2007.
- Dolan John F.,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Wallen, Gorham & Lamont, 1996.
- DOLE Richard F., Jr., "Applicant Ad Hoc Waiver of Discrepancies in the Documents Presented under Letters of Credit," *2006 Annual Survey of Letter of Credit Law & Practice*,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Inc., 2006.
- Erdemol Haluk, "A Summary of the updated ISBP", *DCInsight*, Vol. 13, No. 3, 2007.

ICC,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 under UCP 500*, ICC Publication No. 535.

ICC, *Examination of Documents, Waiver of Discrepancies and Notice under UCP 500* Doc.470/952 rev2.

ICC, [http://www.iccwbo.org/home/news\\_archives/2002/stories/isbp.asp](http://www.iccwbo.org/home/news_archives/2002/stories/isbp.asp)

ICC, *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 ICC Publication No. 632, 2002.

ICC Banking Commission Unpublished Opinions 1995-2004, ICC Publication No. 660, 2005.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subject to UCP 600*, ICC Publication No. 681, ICC Publishing S.A., 2007.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ISBP)*, ICC Publication No. 645, 2003.

Kats Ron , "Editor's note, ISBP 681 approved unanimously", *DCInsight*, Vol. 13, No. 3, 2007.

Kreitman Roger, "UCP 600: The End in sight?," *Letter of Credit Law Developments*. Prepared for CBA Commercial & Financial Transactions Committee and Klein Carter H. Jenner & Block LLP. 2006.

Nilson, Åke , "What's the latest on ICC rules for electronic trade", *DC Insight*, Vol. 6 No. 1, No. 3. Summer, Winter 2000.

Seng, S. C., "Implications and Impact of ISBP", *DCInsight*. Vol.9, No.2, 2003.

## ABSTRACT

### Review on the Updated ISBP 2007

Kang, Won Jin

The update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 681, was published to bring its contents in line with UCP 600. The ISBP 681 has dealt with 185 paragraphs from paragraphs 200 of ISBP 645 that are commonly arising in the credit transactions and also explains in detail some of the articles of UCP 600 with the proper interpretation.

The updated version ISBP 681 involved aligning it with UCP 600, making certain technical adjustments in expression of words such as “in conflict” instead of “inconsistent”, etc. Also descriptions of goods in commercial invoice to be altered the words into “services or performance” in addition to “goods”.

Despite the updated ISBP 681, there remains a question. Where the words “from” or “after” are used in regard to something other than a period of shipment or the maturity date of drafts, there is no guidance from the UCP as to its meaning.

The party concerned in credit transactions is also required to have a full understanding of the paragraphs of ISBP 681 and the articles of UCP 600 in order to acquire the documents preparation and examination facilitating the parties to minimize discrepancies.

**Key Words:** ISBP, UCP, examination of documents, letter of credit